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일하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임순목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8년 3월 14일

나. 회부일자 : 2018년 3월 15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 중 일부를 삭제하여 연구센터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나.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의 기능 수정(안 제3조)

다. 기타 조문 수정(안 제3조, 제7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sup>1)</sup>의 개정에 따른 조

---

1) 이하 “법”이라 한다.

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센터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인 법 제66조의2는 '17. 1. 17. 개정으로 법 제66조의4로 변경되었으며,
-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근거가 아닌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였음.
- 센터의 기능 중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8. 2. 27.~'18. 3. 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 중 일부를 삭제하여 연구센터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